

「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채 의원 외 18명

2. 제안이유

-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미생물을 지역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친환경 농·축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(안 제3조~제4조)
-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 (안 제5조)
- 공급 대상 및 공급의 관리 (안 제6조~제8조)
- 시행규칙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○ 예산조치 :

- 농업기술센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환경정책과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5. 3. ~ 5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농·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, 신청 및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우리 시에서는 2012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(생산가능량 : 50톤, 2021년 30톤 증설)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미생물은 현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.
- 친환경 미생물의 체계적인 생산·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